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안 제2조)

- 총 정 원 : 881명 → 884명 (증 3명)
- 집행기관 : 863명 → 866명 (증 3명)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8명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 신도시 건설계획발표(2003. 5. 9)와 관련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압력 가중에 따른 난 개발의 사전예방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한시적 행정기구 설치 승인신청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금번 정원승인에 따라 파주시의 총 정원은 881명에서 884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 정원은 863명에서 866명으로 조정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8명으로 변동 없으며 오는 2006.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정원승인 인력현황

6급 → 1명 : 토목, 건축

7급 → 1명 : 토목, 건축

8급 → 1명 : 행정

○ 당초, 파주신도시 건설 발표와 관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당초 우리 시에서는 파주도시개발사업단(가칭)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2과 6담당 34명의 한시 기구와 정원을 승인 신청한바 있으나 최소한의 인력인 3명만이 승인됨으로 향후 신도시 관련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경기도에 확인결과 토지수용 등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정원의 추가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도의 실무자 의견으로 보아 추가적인 정원승인이 예상됨으로 향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인력확충을 위한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당분간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요구됨.

지방자치법

제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